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6.2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제2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5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격차해소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7>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2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격차해소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전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검토·심의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15]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15>

제7조 (운영세칙)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회의의 소집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15>

제8조 (장애인·노령자 접근증진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품의 종류)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서비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내용물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 2. 정보통신제품

- 가.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또는 대체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 나. 반응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 다. 시력의 보완 또는 대체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 라. 색상 식별능력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 마. 청력의 보완 또는 대체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 바. 음성입력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 사.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 아. 그 밖에 장애인·노령자의 정신적·신체적 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

[전문개정 2006.11.15]

제9조 (장애인·노령자 접근증진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품 지침 <개정 2006.11.15>)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2.29>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의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06.11.15>)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 1. 기술개발 또는 제품생산 실적
- 2. 기술개발계획 또는 제품생산계획의 적정성
- 3. 개발·생산되는 정보통신제품의 유용성

제11조 (정보내용물 사업자 지원)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내용물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장애인의 재활·복지 향상 및 고용 증진 등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사업자
- 2. 노령자의 건강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사업자
- 3. 농어민의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사업자
- 4. 저소득자의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사업자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정보내용물 제공 실적
- 2. 정보내용물의 지속적인 제공능력
- 3. 정보내용물의 유용성

제12조 (장애인등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등)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1.15>

- 1.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3.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성
- 2.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제13조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 등) ①정부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이용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정보이용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 2. 정보이용시설 설치공간의 적정성
- 3. 정보이용시설 운영인력의 적정성
- 4. 정보이용시설 이용환경의 쾌적성
- 5. 정보이용시설을 통한 정보화교육의 효과
- 6. 인접지역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여부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 ①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이용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정보이용시설의 운영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이용시설의 운영실적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와 장부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활동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취소)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보이용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이용시설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3. 정보이용시설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하게 운영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물품 및 지출되지 아니한 지원비(목적외로 사용되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지출된 지원비를 포함한다)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교육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컴퓨터 기본교육
2. 인터넷 활용교육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외에 필요한 경우 정보화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발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화 교육비용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장애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1.15>

1. 전업주부

2.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모·부자복지시설 등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수용자 또는 이용자

③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1.15, 2008.6.2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3.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4.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의2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실태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1.15]

제19조 (업무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중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부문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 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 지정사업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사업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격차해소의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지원
4.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
5.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6. 그밖에 정보격차해소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